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110356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민기

피 고 1. 주식회사 B

2. C공제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변론 종결 2019. 11. 19.

판결 선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5. 서울 금천구 D건물 지상 A조합 본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4. 공사 내용 : 지하 1층 ~ 지상 7층(연면적 2,149.38m²) 지하 약 80m² 준2층 증축공사/지하 1, 2층 261m²/지상3~6 계단공사/외부 1, 2층 변경 및 지상층 창호공사/옥상휴게데크공사/옥외주차장공사/전기, 소방, 기계설비, 부분 철거 공사/일괄발주 공사임

5. 낙찰방법 :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7. 입찰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9. 입찰무효 :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포함), 법정관리 중인 부적격자 업체

10. 입찰보증금 : 입찰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서와 함께 입찰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되며 보증금은 본 금고에 귀속함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과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찰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업체는 공사용역 최종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본 금고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사무규정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고에 귀속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업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청장에 등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1. 23. 입찰참가를 신청하였고, 2018. 12. 4. 입찰금액을 8억1,500만 원으로 하여 입찰하면서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위 공사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2. 11. 원고에게 계약 일정을 같은 달 18.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사입찰재공고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입찰 및 이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등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산업기본법은 강행규정으로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업종별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건설업자는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혹은 전문공사와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포함된 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있는 점,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그 참가자격은 당해 입찰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인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이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사에는 인테리어공사 외에도 증축공사, 계단공사, 창호공사, 옥상휴게데크공사, 옥외주차장 공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부분철거공사를

포함함에도, 원고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실내건축업 면허만을 소지한 업체를 기재한 점(원고는 위각 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의 부대공사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실내건축업 면허만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건축업 공사 외에 다른 공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됨에도 이 사건 입찰에서 는 전기공사도 함께 발주한 점, 원고는 2019. 1.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공고를 하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업 및 창호철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변경하였고, 전기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수정하여 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예지

별지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벌칙)

4.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

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별표 1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습식·방수 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트·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뽐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예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뽐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뽐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층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예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벽·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뽐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헬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육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7. 금속구조물 · 창호 · 온 실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형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흡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드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가·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랑·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설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

13.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착정공사 등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 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 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 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 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 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 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 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 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 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 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 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 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 자흔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 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 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 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 립·설치하는 공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19. 철강재설치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 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밀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 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 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운돌 설치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 요로의 설치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 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 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	--

끝.